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5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당직수당) 및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개정
- 별표1 삭제

###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총무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749-7164, FAX : 749-7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직에 관한 사항은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택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단서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1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21.05.24.	송도힐즈로 시작점에서 다섯번째 분기도로	동춘동 산63-3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힐즈로5길 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